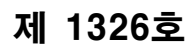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2016년 11월 7일 월요일

선 람	기관장

조례

○ 조	레 제 1 3 6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 조	레 제 1 3 7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조	레 제 1 3 7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조	레 제 1 3 7 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조	레 제 1 3 7 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1
○ 조	레 제 1 3 7 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23

회 람								
--------	--	--	--	--	--	--	--	--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11월 4일

남동구 조례 제136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 기관 (이하“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의 작성·보관·공개

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주요사업,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구청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 임원 해임 및 해임 요구시 절차 등 (제5조)
-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 구청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 (제8조)
-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1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11월 4일

남동구 조례 제137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3조제2항제9호를 같은 항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인천보훈지청장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회는 남동구의 통합방위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 동별 통합방위협의회를 분회로 둘 수 있다.

⑤ 동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안보 역량 강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역통합방위태세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협의

회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통합방위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 추가 (제3조제2항제9호)
- 동 통합방위협의회 활동 내용 신설 (제4조제5항)
- 협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사항 신설 (제8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11월 4일

남동구 조례 제137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한다”를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현행화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의 연임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현행화 (제2조)
- 위촉직 위원 임기 연임 규정 및 연임 제한 규정 (제3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11월 4일

남동구 조례 제137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장”을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다음”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위험도”를 “남동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신 청 일	
------	--	-------	--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소 : (-)	전화 : ()
	FAX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명 :

소속 :

주소 :

사 진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xxx-xxxx-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별지 제3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4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5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6호 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명칭 개정사항 반영 및 법률에 근거없는 의무부과 규제 규정을 삭제하고, 평가단원의 보험가입 주체 등을 명확히하여 지진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명칭 개정사항 반영(지진 재해대책법 ⇒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조)
- 법률에 근거없는 위험도 평가실시 요청에 강제이행 의무부과 규정 삭제 (제3조제2항 단서)
- 위험도 평가단장을 현행화하고, 평가단 구성원 수를 규정 (제5조)
- 위험도 평가단원의 보험가입 주체를 명확화 (제10조)
- 별지 서식의 불필요한 평가자 기입란 삭제 및 법령 명칭 개정 사항 반영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11월 4일

남동구 조례 제137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폐지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으로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동복지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함에 따라
- 기존 ‘동 복지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본문)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11월 4일

남동구 조례 제137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과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따른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학대를 예방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 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